

2008. 4.

수 신 : 제천시의회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
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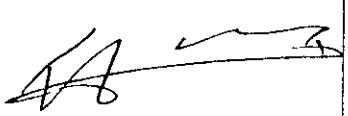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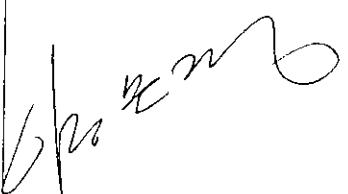
붙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 1부.

발의자 : 성명중 의원 (서명  달인)

외 2인

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고
성명중		
김명성		
양수경		

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248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8. 4.
발의자 : 성명중 의원외 2인

1. 제안이유

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합당한 문법으로 개정하여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(안 제3조)

- 제3조(윤리실천규범)제8호 중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적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 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“적당한” 을 “정당한” 으로

붙임 1.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 끝.

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8호 중 “적당한” 을 “정당한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윤리실천규범)의원은 제2조의 윤리 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	제3조(윤리실천규범)
1 ~ 7. 생략	1 ~ 7. (현행과 같음)
8.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<u>적당한</u>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채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8.